◉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362호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(국토교통부공고 제2026-1079호)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재지정합니다.

2026년 10월 29일

국토교통부장관

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

1.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(조정)

대상지역			면적(㎢)	비 고
합 계			42.13	
서울시	송파구	방이동	1.30	공공주택지구 예정지 및 그 인근지역
		오금동	1.50	
경기도	의정부시	호원동	10.72	
	구리시	사노동	3.22	
	하남시	감북동	2.51	
		감일동	2.09	
		미사동	2.57	
	김포시	사우동	1.30	
		고촌읍 신곡리, 태리, 풍곡리, 향산리	16.92	

2. 허가구역 지정기간(조정) : 2026년 11월 3일부터 2029년 11월 2일까지

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(동일)

용 도 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60㎡ 초과
	상업지역	150㎡ 초과
	공업지역	150㎡ 초과
	녹지지역	200㎡ 초과
	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	60㎡ 초과
도시지역 외의 지역	농 지	500㎡ 초과
	임 야	1,000㎡ 초과
	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	250㎡ 초과

4.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(변경) :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)에서 확인*

* 뉴스 · 소식>공지사항>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공고

※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이동사항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(구역 설정)을 기준으로 함

5. 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(변경) : 붙임 자료 참조

※ 토지e음 홈페이지(http://www.eum.go.kr)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가능